

#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9,205,157	9,576,155
일반회계	300,702,303	9,021,069
특별회계	18,502,854	555,086
기타특별회계	18,502,854	555,086
상수도특별회계	7,828,975	234,869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936,662	28,1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02,502	27,075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043,000	121,290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4,133,348	124,000
주택사업특별회계	2,450	7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27,649	12,829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228,268	6,84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6억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983,77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4)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제 6 조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